

#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분쟁 사례 및 시사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민인기 변호사

November 2014

# 목 차

**I. Fantec v. Herald Wel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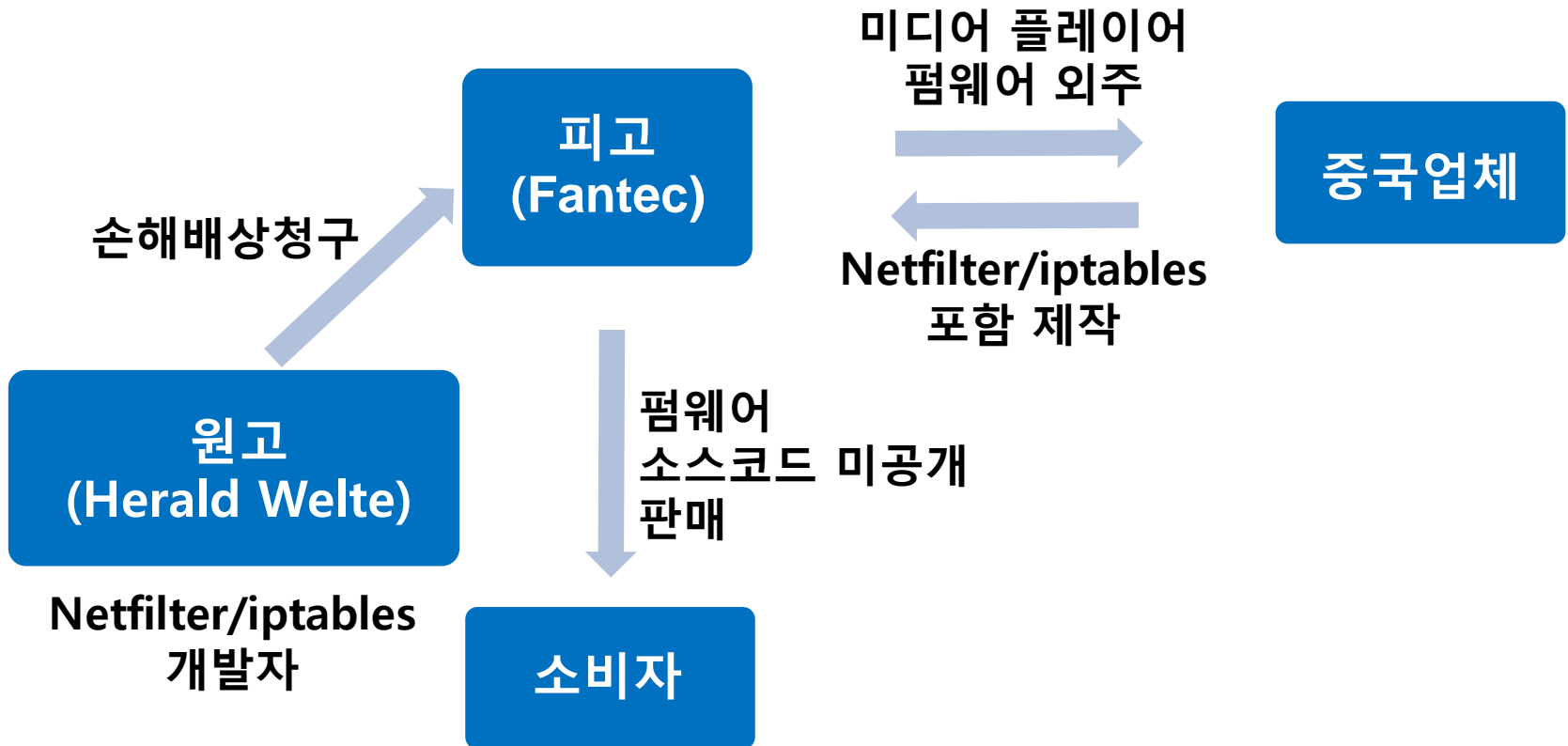
**II. Continuent v. Tekelec**

**III. Ximpleware v. Versata Software&Ameriprise**

**IV. GPL enforcement in Germany**

# I . Fantec v. Herald Welte

## 사실관계



# I . Fantec v. Herald Welte

## 사실관계

### 원고

- ✓ 원고는 netfilter/iptables(방화벽 역할을 하는 리눅스 커널의 일부분)의 개발자
- ✓ 원고는 netfilter/iptables를 GPL v2로 배포

### 피고

- ✓ 피고가 중국 회사에 외주를 줘 제작한 펌웨어에 netfilter/iptables 포함
- ✓ 그러나 피고가 공개한 펌웨어의 소스코드에는 iptables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또한 공개한 펌웨어 소스코드도 최신버전이 아님
- ☞ **원고가 피고의 GPL 미준수를 이유로 독일 함부르크지방법원에 소 제기**
- ✓ 피고는 펌웨어를 제작한 중국 회사가 펌웨어의 완전성을 보증하여 피고는 이를 신뢰하였을 뿐이라고 항변

# I . Fantec v. Herald Wel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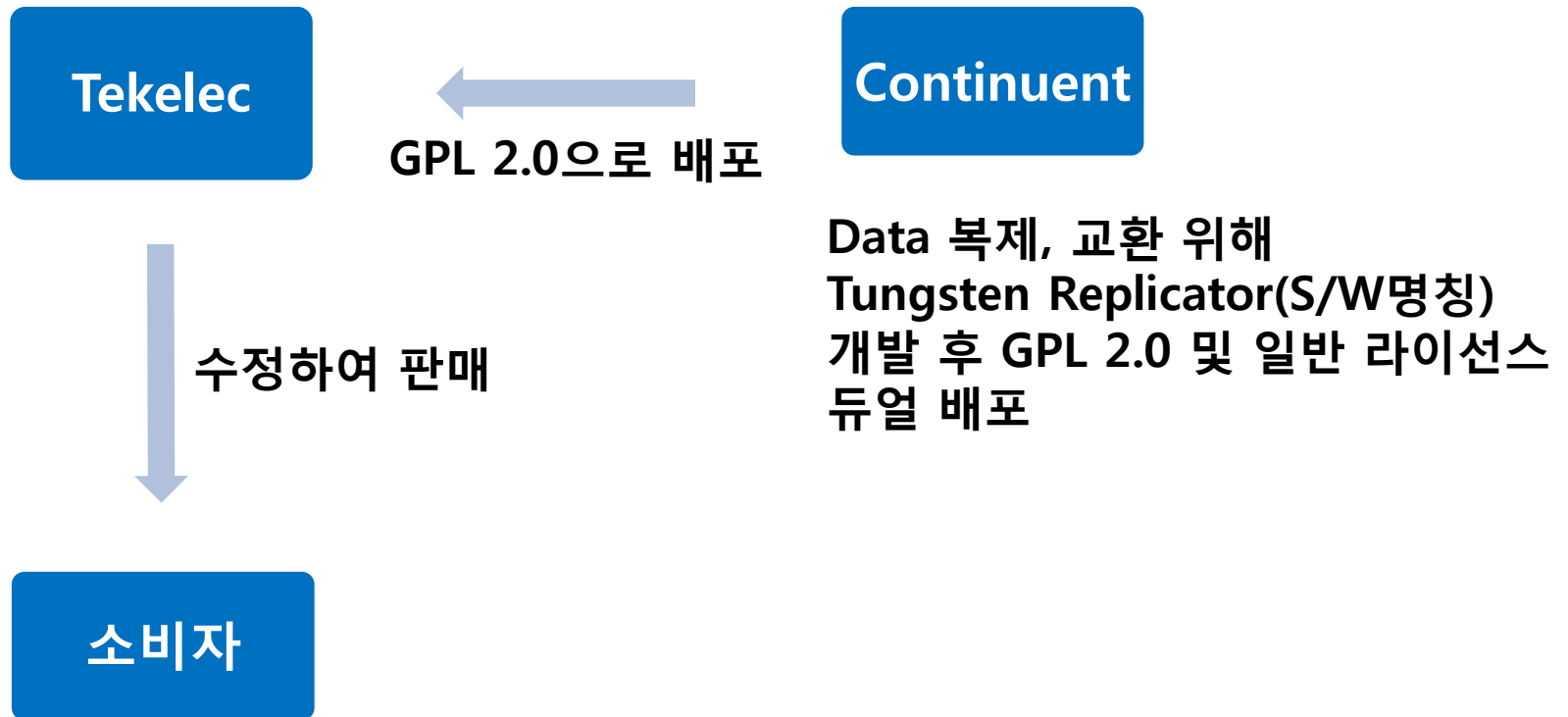
## 법원의 판단 및 시사점

### 독일 함부르크지방법원 2013. 6. 14. 선고

- ✓ GPL v2의 구속력 인정
- ✓ GPL v2 미준수를 이유로 계약상 위약금 5,100 유로 및 원고의 소송 비용 지급 판시
- ✓ 납품회사로부터 납품받은 소프트웨어에 대해 그 회사로부터 라이선스 위반이 없다는 진술보장을 받은 경우라도 납품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한 회사도 라이선스 위반 책임 인정
- ☞ **오픈소스 공급망 전과정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이행 필요**

## II. Continuent v. Tekelec

### 사실관계



## II. Continuent v. Tekelec

### 소송 경과

#### 원고의 주장

- ▶ Continuent는 Tekelec 에게 GPL 외의 상업용 라이선스 부여하지 않았음
- ▶ Tekelec은 GPL 라이선스 고지, 소스코드 배포 내지 배포청약 등 GPL 조건 미준수
- ▶ Tekelec이 GPL 2.0 라이선스 의무 불이행한 날부터 GPL 자동 종료(GPL 2.0 제4조)
- ▶ GPL 종료 이후 라이선스 없이 소프트웨어 사용은 저작권 침해

#### 피고의 주장

- ▶ Tekelec은 GPL 라이선스 고지, 소스코드 배포 내지 배포청약 등 GPL 조건 준수하였음

#### 소송의 결과

- ▶ 미 연방 캘리포니아 남부지법에서 2014. 2. 26. 쌍방 합의로 소 취하

## II. Continuent v. Tekelec

### 한국법에서의 시사점

#### 이용허락 조건 위반은 저작권 침해인가?

- 저작권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으면, 그 허락받은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음. 위반한 경우 그 효과는?
  - 저작권의 본래적 내용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  
(ex: 이용기간, 이용형태 기타 이용회수 등에 대해 위반을 하는 경우)
  - 부가적인 채권채무관계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채무불이행  
(ex: 로열티 지급의무 위반, 기타 이용허락시 부가 된 비밀유지의무 등에 대한 위반)
- ☞ 후자의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여야 이후 발생하는 행위에 대해 저작권 침해 주장이 가능

**GPL 위반은 한국법 하에서도 별도의 계약해지 절차 없이 저작권 침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음**



## II. Continuent v. Tekelec

### 한국법에서의 시사점

#### 영리목적 혹은 상습성이 있는 경우에는?

➤ 비친고죄(저작권법 제140조)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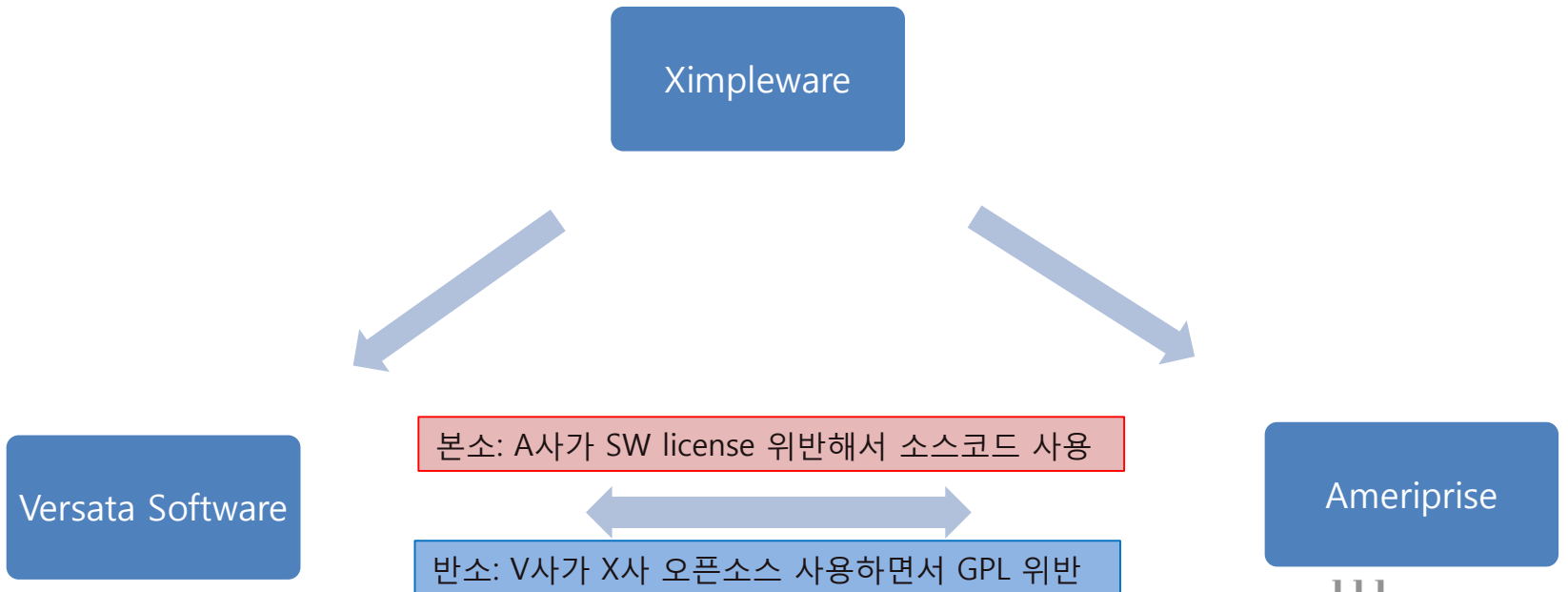
1.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제136조제1항제1호, 제13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제124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못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제13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2부터 제3호의7까지, 제13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와 제138조제5호의 경우

☞ 저작권법 제141조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어 법인에게도 벌금형 부과가 가능함

# III. Ximpleware v. Versata Software & Ameriprise Versata Software v. Ameriprise

## 사실관계

Versata Software	Ameriprise	Ximplewar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CM sw 개발 Ameriprise에 라이선스</li> <li>• DCM에는 GPL2로 배포한 VTD-XML 포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V사는 A사가 승인 없이 DCM 소스 코드를 아웃소싱 업체에 제공했다고 주장</li> <li>• A사는 모두 부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VTD-XML을 GPL 2로 배포</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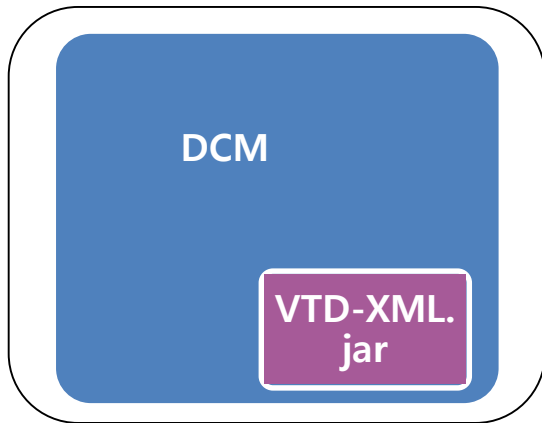


# III. Ximpleware v. Versata Software & Ameriprise Versata Software v. Ameripri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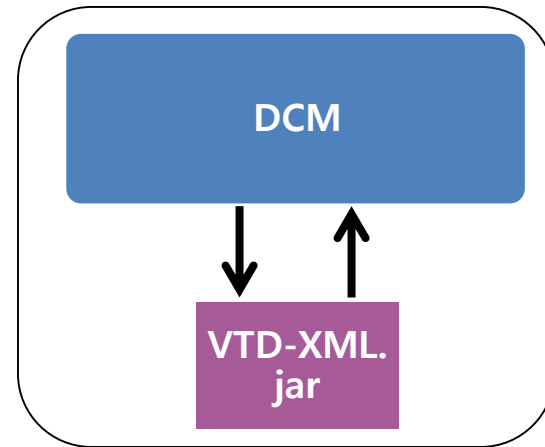
## 사실관계

### VTD-XML과 DCM

- VTD-XML: X사가 개발한 고효율 XML parsing 소프트웨어 – 기존 XML parsing 소프트웨어보다 약 5~10배 정도 빠르게 작동
- DCM(Distribution Channel Management): 물류 관리 소프트웨어
  - ☞ X사의 VTD-XML.jar의 소스코드가 V사의 DCM의 소스코드의 일부를 이루는지 (integrated) 여부가 다투어짐



X사 주장



V사 주장

# III. Ximpleware v. Versata Software & Ameriprise Versata Software v. Ameriprise

## GPL 관련 쟁점

### V사, A사는 X사의 저작권을 침해했는가?

- X사: 라이선스 없이 VTD-XML 사용했으므로 저작권 침해
- V사: VTD-XML은 GPL 2.0으로 배포되었으므로 V사도 자동으로 GPL 2.0 라이선스 취득한 적법한 권리자 주장
- A사: VTD-XML을 복제하지 않았고 상업라이선스로 배포하지 않았으므로 GPL 2.0 제4조 위반하지 않은 적법한 권리자임

### GPL 2.0 제4조

4. You may not copy, modify, sublicense, or distribute the Program except as expressly provided under this License. Any attempt otherwise to copy, modify, sublicense or distribute the Program is void, and will automatically terminate your rights under this License. **However, parties who have received copies, or rights, from you under this License will not have their licenses terminated so long as such parties remain in full compliance.**

### III. Ximpleware v. Versata Software & Ameriprise Versata Software v. Ameriprise

#### GPL 관련 쟁점

#### X사의 VTD-XML을 이용하여 V사가 개발한 DCM이 GPL 적용 대상?

- 원고(X): DCM은 VTD-XML 사용한 work based on the program
- 피고(V): VTD-XML.jar은 DCM과 같은 저장장치에 담겨 배포되나 이들 모듈이 서로 결합되어 있지 않고 독립적으로 설계되어 GPL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GPL 제2조).

#### GPL 2.0 제2조

4. ... In addition, mere aggregation of another work not based on the Program with the Program (or with a work based on the Program) on a volume of a storage or distribution medium does **not** bring the other work under the scope of this License.

# III. Ximpleware v. Versata Software & Ameriprise Versata Software v. Ameriprise

## 한국법에서의 시사점

### Work based on the program과 2차적 저작물

➤ 제5조(2차적저작물) ①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② 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원 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혹은 원 저작자가 설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성립/ 다만 이 경우에도 2차적 저작물의 작성자는 해당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자로 보호가 됨

➤ **모듈도 2차적 저작물인가?**

## VI. GPL enforcement in Germany

### 사실관계

#### 독일에서의 GPL 집행

- P는 리눅스 커널과 관련 유틸리티의 저작권자
- 최근 P는 독일에서 GPL관련 집행을 실시하였음
- 2014. 7. 유럽회사를 상대로 100여 개의 firmware제품에 대한 사용중지를 통보

☞ **Firmware의 온라인배포가 쟁점**

# VI. GPL enforcement in Germany

## P의 주장요지

### GPL 2.0 위반

#### 1. 소스코드 제공방법:

- ✓ 서면청약이 없는 다운로드옵션만의 제공은 제3조a 항 위반임
- ✓ (매뉴얼에 GPL설명과 소스코드 저장소를 언급하는 것으로 부족)

#### 2. 라이선스 텍스트의 제공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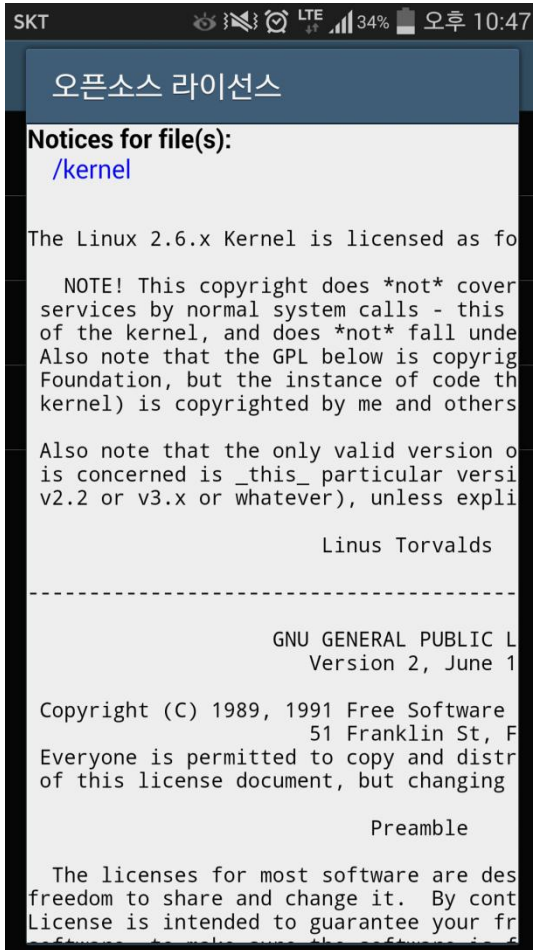
- ✓ 바이너리 코드(firmware) 자체와 함께 또는 그 안에 실제로 제공되지 않는 것은 제 1항 위반임
- ✓ (라이선스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는 Android device나 QR코드로 라이선스를 제공하는 방법도 위반의 소지 있음)

#### 3. 패치소프트웨어의 경우라도 저작권 고지를 해야 함



# VI. GPL enforcement in Germany

## 라이선스 텍스트의 제공방법 비교



전문 포함



링크 제공

## VI. GPL enforcement in Germany

### 관련규정

#### GPL 2.0 제1조

You may copy and distribute verbatim copies of the Program's source code as you receive it, in any medium, provided that you **conspicuously and appropriately** publish on each copy an appropriate copyright notice and disclaimer of warranty; keep intact all the notices that refer to this License and to the absence of any warranty; and give any other recipients of the Program a copy of this License along with the Program.

#### GNU FAQ

...It might be tempting to include a URL that refers to the license, instead of the license itself. But you cannot be sure that the URL will still be valid, five years or ten years from now. Twenty years from now, URLs as we know them today may no longer exist.

The only way to make sure that people who have copies of the program will continue to be able to see the license, despite all the changes that will happen in the network, is to **include a copy of the license in the program.**

## VI. GPL enforcement in Germany

### 시사점

#### 대책 방안

- 오래된 펌웨어도 소스코드의 다운로드 방법만 제공한다면 분쟁의 소지가 있음.
- 펌웨어는 다운로드 아카이브의 일부 또는 펌웨어 자체 안에 라이선스 텍스트를 포함시켜야 한다.
- 저작권 고지에 관해 보다 면밀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 Thank you

contact point

변호사 민인기

Direct : 02 3404 0666 Fax : 02 3404 0805

Email : [ingi.min@bkl.co.kr](mailto:ingi.min@bkl.co.kr)